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1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33-8828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인천광역시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비규제지역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대규모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12.19.(금)	2025.12.29.(월)	2025.12.30.(화)	2025.12.31.(수)	2026.01.08.(목)	2026.01.10.(토)~ 2026.01.12.(월)	2026.01.20.(화)~ 2026.01.22.(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신일비아프크레스트.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12.19.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O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2.19.(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아파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에 따라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를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해서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12.29.(월)	2025.12.30.(화)	2025.12.31.(수)	2026.01.08.(목)	2026.01.10.(토)~ 2026.01.12.(월)	2026.01.20.(화)~ 2026.01.22.(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8)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인천광역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1.08.)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 (단, 전매제한 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까지)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 29039호(2025.12.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95-2(영종하늘도시 A19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21층 5개동 총 444세대

[특별공급 329세대(기관추천 43세대, 경제자유구역 43세대, 다자녀가구 42세대, 신혼부부 104세대, 노부모부양 12세대, 생애최초 85세대) **포함]** 및 주민공동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경제자 유구역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634	01	084.9770A	84A	84.9770	25.6902	110.6672	63.2811	173.9483	62.4051	368	36	36	36	85	11	70	274	94	21
	02	084.9081B	84B	84.9081	26.2132	111.1213	63.2298	174.3510	62.3545	20	2	2	2	5	-	4	15	5	1
	03	084.8156C	84C	84.8156	26.6611	111.4767	63.1609	174.6375	62.2865	36	3	3	2	9	1	7	25	11	2
	04	084.6387D	84D	84.6387	25.8472	110.4859	63.0291	173.5150	62.1566	20	2	2	2	5	-	4	15	5	1
	합 계									444	43	43	42	104	12	85	329	115	25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84A	84B	84C	84D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4	-	-	-	4
		장기복무제대군인	4	-	-	-	4
	장애인	인천광역시	8	2	1	2	13
		서울특별시	3	-	1	-	4
		경기도	3	-	1	-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7	-	-	-	7
	중소기업 근로자		7	-	-	-	7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36	2	3	2	4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8	1	1	1	21
	서울특별시·경기도거주자(50%)		18	1	1	1	21
신혼부부 특별공급			85	5	9	5	10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1	-	1	-	12
생애최초 특별공급			70	4	7	4	85
합계			274	15	25	15	32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호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합계금액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계약시	30일이내	2026.06.22.	2026.10.22.	2027.02.22.	2027.07.22.	2027.10.22.	2028.02.22.	
84A	362동 (1,2호) 364동 (1호) 365동 (1,2호)	1층	5	159,234,630	329,065,370	488,300,000	10,000,000	38,830,000	48,830,000	48,830,000	48,830,000	48,830,000	48,830,000	48,830,000	146,490,000
		2층	5	164,550,060	340,049,940	504,600,000	10,000,000	4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151,380,000
		3층	5	169,865,490	351,034,510	520,900,000	10,000,000	4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156,270,000
		4층	5	173,387,370	358,312,630	531,700,000	10,000,000	43,170,000	53,170,000	53,170,000	53,170,000	53,170,000	53,170,000	53,170,000	159,510,000
		5층~6층	10	175,148,310	361,951,690	537,100,000	10,000,000	43,710,000	53,710,000	53,710,000	53,710,000	53,710,000	53,710,000	53,710,000	161,130,000
		7층~10층	20	180,105,030	372,194,970	552,300,000	10,000,000	45,230,000	55,230,000	55,230,000	55,230,000	55,230,000	55,230,000	55,230,000	165,690,000
		11층~15층	25	182,811,660	377,788,340	560,600,000	10,000,000	46,060,000	56,060,000	56,060,000	56,060,000	56,060,000	56,060,000	56,060,000	168,180,000
		16층 이상	23	185,518,290	383,381,710	568,900,000	10,000,000	46,890,000	56,890,000	56,890,000	56,890,000	56,890,000	56,890,000	56,890,000	170,670,000
	363동 (1,4,5호)	1층	3	159,234,630	329,065,370	488,300,000	10,000,000	38,830,000	48,830,000	48,830,000	48,830,000	48,830,000	48,830,000	48,830,000	146,490,000

		2층	3	164,550,060	340,049,940	504,600,000	10,000,000	4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151,380,000
		3층	3	169,865,490	351,034,510	520,900,000	10,000,000	4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156,270,000
		4층	3	173,387,370	358,312,630	531,700,000	10,000,000	43,170,000	53,170,000	53,170,000	53,170,000	53,170,000	53,170,000	53,170,000	159,510,000
		5층~6층	6	175,148,310	361,951,690	537,100,000	10,000,000	43,710,000	53,710,000	53,710,000	53,710,000	53,710,000	53,710,000	53,710,000	161,130,000
		7층~10층	12	178,181,040	368,218,960	546,400,000	10,000,000	44,640,000	54,640,000	54,640,000	54,640,000	54,640,000	54,640,000	54,640,000	163,920,000
		11층~15층	15	180,822,450	373,677,550	554,500,000	10,000,000	45,450,000	55,450,000	55,450,000	55,450,000	55,450,000	55,450,000	55,450,000	166,350,000
		16층 이상	6	183,496,470	379,203,530	562,700,000	10,000,000	46,270,000	56,270,000	56,270,000	56,270,000	56,270,000	56,270,000	56,270,000	168,810,000
	362동 (3,4,5호) 363동 (2,3호) 364동 (2,3,4,5호) 365동 (3,4,5,6호)	1층	9	159,234,630	329,065,370	488,300,000	10,000,000	38,830,000	48,830,000	48,830,000	48,830,000	48,830,000	48,830,000	48,830,000	146,490,000
		2층	9	164,550,060	340,049,940	504,600,000	10,000,000	4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151,380,000
		3층	13	169,865,490	351,034,510	520,900,000	10,000,000	4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156,270,000
		4층	13	173,387,370	358,312,630	531,700,000	10,000,000	43,170,000	53,170,000	53,170,000	53,170,000	53,170,000	53,170,000	53,170,000	159,510,000
		5층~10층	78	175,148,310	361,951,690	537,100,000	10,000,000	43,710,000	53,710,000	53,710,000	53,710,000	53,710,000	53,710,000	53,710,000	161,130,000
		11층~15층	65	179,583,270	371,116,730	550,700,000	10,000,000	45,07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165,210,000
		16층 이상	32	182,224,680	376,575,320	558,800,000	10,000,000	45,880,000	55,880,000	55,880,000	55,880,000	55,880,000	55,880,000	55,880,000	167,640,000
84B	361동 (3호)	1층	1	155,093,160	320,506,840	475,600,000	10,000,000	37,560,000	47,560,000	47,560,000	47,560,000	47,560,000	47,560,000	47,560,000	142,680,000
		2층	1	160,245,540	331,154,460	491,400,000	10,000,000	39,14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147,420,000
		3층	1	165,430,530	341,869,470	507,300,000	10,000,000	40,730,000	50,730,000	50,730,000	50,730,000	50,730,000	50,730,000	50,730,000	152,190,000
		4층	1	168,887,190	349,012,810	517,900,000	10,000,000	41,790,000	51,790,000	51,790,000	51,790,000	51,790,000	51,790,000	51,790,000	155,370,000
		5층~6층	2	170,615,520	352,584,480	523,200,000	10,000,000	42,32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156,960,000
		7층~10층	4	175,441,800	362,558,200	538,000,000	10,000,000	4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61,400,000
		11층~15층	5	178,050,600	367,949,400	546,000,000	10,000,000	4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163,800,000
		16층 이상	5	180,692,010	373,407,990	554,100,000	10,000,000	45,410,000	55,410,000	55,410,000	55,410,000	55,410,000	55,410,000	55,410,000	166,230,000
84C	361동 (2호)	1층	1	158,810,700	328,189,300	487,000,000	10,000,000	3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46,100,000
		2층	1	164,093,520	339,106,480	503,200,000	10,000,000	40,320,000	50,320,000	50,320,000	50,320,000	50,320,000	50,320,000	50,320,000	150,960,000
		3층	1	169,376,340	350,023,660	519,400,000	10,000,000	4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155,820,000
		4층	1	172,898,220	357,301,780	530,200,000	10,000,000	4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159,060,000
		5층~6층	2	174,659,160	360,940,840	535,600,000	10,000,000	43,560,000	53,560,000	53,560,000	53,560,000	53,560,000	53,560,000	53,560,000	160,680,000
		7층~10층	4	179,615,880	371,184,120	550,800,000	10,000,000	45,08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165,240,000
		11층~15층	5	182,322,510	376,777,490	559,100,000	10,000,000	45,910,000	55,910,000	55,910,000	55,910,000	55,910,000	55,910,000	55,910,000	167,730,000
		16층 이상	5	184,996,530	382,303,470	567,300,000	10,000,000	46,730,000	56,730,000	56,730,000	56,730,000	56,730,000	56,730,000	56,730,000	170,190,000
	361동 (1호)	3층	1	169,376,340	350,023,660	519,400,000	10,000,000	4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155,820,000
		4층	1	172,898,220	357,301,780	530,200,000	10,000,000	4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159,060,000
		5층~6층	2	174,659,160	360,940,840	535,600,000	10,000,000	43,560,000	53,560,000	53,560,000	53,560,000	53,560,000	53,560,000	53,560,000	160,680,000
		7층~10층	4	177,659,280	367,140,720	544,800,000	10,000,000	4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163,440,000
		11층~15층	5	180,333,300	372,666,700	553,000,000	10,000,000	4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165,900,000
		16층 이상	3	183,007,320	378,192,680	561,200,000	10,000,000	46,120,000	56,120,000	56,120,000	56,120,000	56,120,000	56,120,000	56,120,000	168,360,000
84D	361동 (4호)	1층	1	155,810,580	321,989,420	477,800,000	10,000,000	37,780,000	47,780,000	47,780,000	47,780,000	47,780,000	47,780,000	47,780,000	143,340,000
		2층	1	160,995,570	332,704,430	493,700,000	10,000,000	39,370,000	49,370,000	49,370,000	49,370,000	49,370,000	49,370,000	49,370,000	148,110,000
		3층	1	166,180,560	343,419,440	509,600,000	10,000,000	40,960,000	50,960,000	50,960,000	50,960,000	50,960,000	50,960,000	50,960,000	152,880,000
		4층	1	169,637,220	350,562,780	520,200,000	10,000,000	4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156,060,000
		5층~10층	6	173,093,880	357,706,120	530,800,000	10,000,000	4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159,240,000
		11층~15층	5	175,702,680	363,097,320	538,800,000	10,000,000	43,880,000	53,880,000	53,880,000	53,880,000	53,880,000	53,880,000	53,880,000	161,640,000
		16층 이상	5	178,311,480	368,488,520	546,800,000	10,000,000	44,680,000	54,680,000	54,680,000	54,680,000	54,680,000	54,680,000	54,680,000	164,040,000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본 사업의 사업부지는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대지비를 산정하였으며 같은 타입의 세대별로 대지지분은 같더라도 대지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는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 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발코니비확장 기본형세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같이 대지지분은 연면적 기준으로 근린생활시설과 안분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범위를 정하며,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기타 대출방식 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을 통해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4 특별공급

■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td></tr>
</table>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으로서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이 선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및「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3조제2항제5호 및「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table>
<tr><td></td><td>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제3조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의 당해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외국인투자 촉진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또는 당해지구에 외국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당해지구 안에 연구소만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
나. "종사자"라 함은「근로기준법」에 근로자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기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약국"이라 함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을 말한다.
라. "의료기관"이라 함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마. "교육기관"이라 함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 확정자 및 예비자가 선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당첨확정자 또는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약 미신청시 계약불가)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td></tr>
<tr><td>구비서류</td><td>
<table>
<tr><th>구분</th><th>구비서류</th></tr>
<tr><td>공통서류</td><td>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법인신청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신청인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무주택서약서, 경제자유구역특별공급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청약통장 가입 증빙확인서류,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 증명서</td></tr>
<tr><td>내국인</td><td>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td></tr>
<tr><td>외국인</td><td>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사실 확인서</td></tr>
</table>
</td></tr>
<tr><td>유의사항</td><td>1.「주택법」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의 규정에 준용하며,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되어 주택을 공급 받은 자가 자격을 상실하는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2.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그 주택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함.
3.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신청은 특별공급 청약접수 전 사업주체에 신청서를 제출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대상자 적합여부 확인을 받은 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수 하여야 합니다.
4.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홈에서 청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의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td></tr>
</table>

4-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2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①지역 : 해당시·도 거주자 50%(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지역 낙첨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재경쟁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배점
<table>
<tr><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준</th><th>점수</th></tr>
<tr><td>계</td><td>100</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3명</td><td>35</td></tr>
<tr><td>2명</td><td>25</td></tr>
<tr><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2명</td><td>10</td></tr>
<tr><td>1명</td><td>5</td></tr>
<tr><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
<tr><td>한부모 가족</td><td>5</td><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
<tr><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
<tr><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td rowspan="3">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0</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5</td></tr>
<tr><td>입주자저축가입기간(6)</td><td>5</td><td>10년 이상</td><td>5</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td></tr>
</table>
</td></tr>
</table>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4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10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③지역 :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2.19.(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table>
<tr><td></td><td>-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
<tr><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9">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r><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r>
<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
<tr><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
<tr><td>3명</td><td>20</td><td></td><td></td></tr>
<tr><td rowspan="9">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9">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r>
<tr><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
<tr><td colspan="6">※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td></tr>
</table>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td></tr>
<tr><td>비고</td><td>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td></tr>
</table>

4-6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 범위 : 85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②지역 :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td></tr>
<tr><td>비고</td><td>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td></tr>
</table>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2.19.(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

	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2.1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1.08.(목) ~ 2026.01.17.(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1.08.(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 확인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 일정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	2026.01.10.(토) ~ 2026.01.12.(월)	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8번지
예비 입주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은 별도 통보 예정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2.19.)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당첨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아래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 확인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제출기간에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유형별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하며,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여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소득 등)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며, 미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의 서류 미제출 시 계약포기로 간주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제출된 자격 확인 서류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 후 해당 기간이 경과 시 폐기합니다.
-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분 제외)(※모바일 신분증 불가)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용도:주택 공급 신청(계약)용)※정부 24온라인 발급'인감증명서'사용 가능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제출 시 대리 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대리인 위임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 대저 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에 한하며, 세대원 전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군복무기간(10년이상)을 명시 • 해당지역외지역에거주하는25년이상장기복무군인이해당지역으로당첨된경우→군복무기간(25년이상)을명시
기존주택처분 조건청약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3항(출산특례)에 따른 특별공급을 청약 신청하는 경우 :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주택 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 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 날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 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공급 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해외 체류 기간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 부임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세 대원 및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 국가 체류 기간 여부 확인 • 기록 대조일:생년월일~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Y"로 설정하여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 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 기간 연속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 부임 인정 불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해당 기관에서 회신한 '기관추천대상자 명단'으로 대체 및 확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배점기준표	본인	• 배점기준표 작성(견본주택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 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 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 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 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 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공급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의직계비속을미혼인미성년자녀로인정받고자할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상세"로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확인 작성(견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 공급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 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표 1.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서발행한서류에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 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주민) 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원은 전원 인증서(공동・금융) 준비 필수 ※부동산 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전국 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제출(해당 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상 등재되어 소득 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1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 신생아 우선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가점산정 기준표	본인	• 가점산정 기준표 작성(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 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요양 시설 및 해외 체류 중(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 대 주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 요양 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피부 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1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전체 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 30세 미만: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만 30세 이상: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 요양 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확인 작성(견본주택 비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 2.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표 1.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 공급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 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본인 및 세대원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 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발급 시(주민) 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원은 전원 인증서(공동・금융) 준비 필수 ※부동산 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전국 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제출(해당 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표 3.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참고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피부양 직계비속	• 신생아 우선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가구원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 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 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 이날인 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상 등재되어 소득 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1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경우)이 동일 등본 상만 18세 이상인 자녀를'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		가점산정 기준표	본인	• 가점산정 기준표 작성(견본주택 비치)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산입(1~3점) 한 경우 -청약홈>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청약통장가입확인용>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순위 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산입(1~3점) 한 경우 - (청약 홈) 청약 홈>청약 소통방>APT 당첨 사실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 요양 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 요양 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 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비속	• 피부 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 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 :요양 시설 및 해외 체류 중(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 직계비속 :만 30세 미만-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만 30세 이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 제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피부양 직계존·비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주택 및'분양권 등'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무허가 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 예정 증명서 등 -'소형·저가 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 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임대차 계약서, 낙찰 증명 서류(경매:매각허가 결정, 공매:매각결정통지서 등) • 등기사항 증명서(임차주택), 임차 주택 병·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매:배당표, 배당요구 신청서 등/

					공매:배분계산서 등)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접수 시 필요서류 일체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인감증명서 : 계약자 본인발급용 /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위임장	당첨자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문증, 인장(서명)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12월21일 이후 신규 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12. 19.)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1.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구분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발급)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또는 홈택스)
	금년도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①재직증명서 ②금년도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분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원본(직인 날인) ※근로 기간이 ①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 인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의 연봉/근로계약서(직인 날인)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재직증명서 ②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근무처별 소득 명세표상"주(현)"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 새 근무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해당)	①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 급여 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 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②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또는 홈택스)
	신규사업자	①[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 상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 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사업자 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또는 홈택스)
	법인사업자	①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등기소

		②전년도 재무제표 ③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세무서(또는 홈택스) - 해당직장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등)	계속적인 프리랜서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전년도 해촉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또는 홈택스)
	신규 프리랜서	①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 근로계약서 ②해당기간의 해촉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또는 홈택스)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계속적인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해당직장 - 세무서(또는 홈택스)
	신규 근로자	①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 해당직장 - 세무서(또는 홈택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주민센터
농업인		①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센터
무직자		①비사업자 확인각서 ②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견본주택 비치 - 세무서(또는 홈택스)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청약신청자 본인)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 서류	근로자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세무서 - 해당직장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사업자등록증사본	

			②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 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결정세액이 0 또는(-)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추가 제출 ②건강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③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 금액 증명제 출자에 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 연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 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 도소 득세 납부증명 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소득 금액증명원 원본 및 납부내역 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 금액 증명제 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④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 금액증명	- 세무서 - 해당직장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2.19.)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함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증빙 제출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경우	필수	①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주택, 건물(토지) 등 기사한 전부 증명서(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①, ②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포함)
	해당자	①공동(개별) 주택 가격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개별 공시지가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인 경우) ③건축물 시가 표준액 조회 결과(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조회/발급>주택 외 건물 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지방세 정보>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 시가 표준액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해당 행정복지센터 ③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추가 해당자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 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 소유현황"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해당 행정복지센터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2.1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모든 당첨자는 계약전에 당첨자격 서류검수를 완료하셔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문의 전화
정당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1.20.(화) ~ 2026.01.22.(목), 3일간 (10:00~16:30)	당사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8	1833-8828

※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https://신일비아프크레스트.com)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합니다.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아래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용 (발급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 일반주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주택: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무효확인서 등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부동산거래신고 6억 이상의 경우(홈페이지 서식 게시)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인지세납부)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 별도 납부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방법 및 금액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및출력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대리인 계약시	○		위임장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여권(2020.12.21.이전 발급분에 한함)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2.1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분은 당첨자 자격확인이 완료된 후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 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 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따른 인지세는 별도 납부대상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공급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항 납부지연가산세의 내용에 따라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table>
<tr><th colspan="6">인지세 납부 안내</th></tr>
<tr><td>대상 증서</td><td colspan="5">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도급 증서)</td></tr>
<tr><td>납부 기한</td><td colspan="5">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td></tr>
<tr><td>납부 방법</td><td colspan="5">1.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재→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td></tr>
<tr><td rowspan="4">납부 금액</td><td>구분</td><td>계약서 기재금액</td><td>총 납부 세액</td><td>계약자 부담 금액</td><td>비고</td></tr>
<tr><td rowspan="2">아파트 분양 계약</td><td>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td><td>150,000원</td><td>75,000원</td><td rowspan="3">해당세대</td></tr>
<tr><td>10억 초과</td><td>350,000원</td><td>175,000원</td></tr>
<tr><td>추가선택품목 계약</td><td>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td><td>20,000원</td><td>10,000원</td></tr>
</table>

	(발코니확장 공사 및 유상옵션 포함)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원	20,000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10억 초과	350,000원	175,000원	

※ 수입인지 구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 ☎1577-5500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신한은행	140-015-855276	(주)한국토지신탁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 현금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601동 1201호 계약자 → '16011201홍길동')

※ 계약금 납부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중 중도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예비입주자 선정에 따른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추후 통보예정이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보를 받지 못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미 방문 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 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① 청약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③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신청자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제한사항은 예외)

④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⑤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⑥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당첨자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또한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인천광역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자격확인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 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은 계약일 이후 사업주체, 시공사와 협의 후 별도 지정됩니다.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총 분양대금의 10% 완납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부 정책, 대출 취급 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및 법인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적격 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시장의 정책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대출로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주택법」제48조의2「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8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납부, 열쇠인수, 이사 또는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내에는 열쇠인수일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 품목은 입주자의 선택사항으로 추가 선택 품목의 금액 및 물품 등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임의 결정한 금액이며, 분양승인대상(분양가상한제 비대상)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사인 ㈜신일과 고객 간에 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사업주체 겸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과 무관하며,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관련 하자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 겸 위탁자인 ㈜신일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금액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타입)	발코니 확장위치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금액 및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20% (2027.07.22.)	잔금 70% (입주시)	
84A	거실+주방+드레스룸+침실2+침실3	3,918,000	391,800	783,600	2,742,600	
84B	거실+주방+침실2+침실3+알파룸	3,655,000	365,500	731,000	2,558,500	
84C	거실+주방+드레스룸+침실2+침실3	3,791,000	379,100	758,200	2,653,700	
84D	거실+주방+드레스룸+침실2+침실3+알파룸	3,979,000	397,900	795,800	2,785300	

(1)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신한은행	140-015-855276	㈜한국토지신탁

-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361동503호 홍길동 → 3610503홍길동(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세대별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계약금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2) 발코니 확장 공통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12.02.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확장범위는 최종 사업승인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자료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색상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 및 브랜드, 모델, 색상, 크기, 개폐방향, 개폐방식,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디자인, 색상 및 규격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각 세대의 일부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수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냉매배관 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 미확장형을 선택 시에는 인접한 발코니 확장형 세대의 결로방지 및 단열을 위하여 비확장 세대의 해당 발코니 벽, 바닥, 천장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돌출 시공되거나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확장 세대의 배관 일부가 비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될 수 있어 미관저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위탁사,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외기에 직접 면해있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준공이후 발코니 확장을 직접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결로, 누수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 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일반가구, 주방가구, 시스템가구 등)와 확장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제공되는 가구 등으로 인하여 가려지는 부분은 마감재(천장, 벽, 바닥)가 시공되지 않으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기본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에서 비확장 되는 부위(안방발코니)의 발코니 외부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난방 및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별도의 추가 단열재는 시공되지 않습니다.(단, 다용도실은 동절기에 원활한 세탁기 활용을 위해 벽체 단열재 및 이중창 설치함)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고(일부 유상 옵션타입 반영),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발코니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되거나,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계약은 아파트 분양계약("모계약")에 부속하는 계약으로 모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일체의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당 모집공고 공동주택의 견본주택은 84A형으로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 추가선택 품목은 타입별로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광파오븐, 인덕션), 마감재(주방상판), 가구(침실 장) 등 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 진행되며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 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구입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 또는 이후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주택형별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은 시공사에서 계약자와 직접 계약체결 예정이므로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대금수납, 계약체결, 하자관리 등은 시공사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이 변경 될 시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시공사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는 아파트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 및 해제가 불가하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이후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중 개별기기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 제품일지라도 산정기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분양계약이 아니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시공사와 수분양자간 계약체결사항으로, 미시공 오시공 및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옵션계약대금 반환 등은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신탁과는 무관하며, ㈜한국토지신탁에 기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신한은행	140-009-833262	㈜신일

■ 추가선택품목 납부일정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 및 금액	(계약 시)	(2027.07.22.)	(입주지정일)
	공급금액 합계액의 10%	공급금액 합계액의 20%	공급금액 합계액의 70%

- 견본주택 내에서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의 현금 또는 수표납부, 신용카드 결제 납부는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체결시 상기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1동 101호 홍길동 → 101101홍길동)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 및 발코니확장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천장형 에어컨

(금액단위 : 원, VAT포함)

적 용 타 입	선택	구성	설치대수	제조사별 금액	
				LG	삼성
84A	1	거실+침실1	2	3,400,000	3,400,000
	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6,400,000	6,400,000
84B	1	거실+침실1	2	3,400,000	3,400,000
	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6,400,000	6,400,000
	3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5	8,100,000	8,100,000
84C	1	거실+침실1	2	3,400,000	3,400,000
	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6,400,000	6,400,000
84D	1	거실+침실1	2	3,400,000	3,400,000
	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6,400,000	6,400,000
	3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5	8,100,000	8,100,000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은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냉/온풍기로서 유상옵션 선택 시에는 냉방만 가동 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 시에는 유상옵션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단종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전원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냉매 매립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되며, 시스템 에어컨 계약 이후 선택 취소 시, 기본제공 품목인 냉매 매립배관의 시공은 불가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거실 및 안방)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별도의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 등을 추가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과 달리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의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실외기(각 실내기 소요 용량 합산, 조합률을 고려하여 제조사가 보증한 범위 내에 적합한 사양으로 설치)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진동이 발생하고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실외기실에 냉매배관이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되고 공간이 협소해집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옵션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냉장고+김치냉장고 (LG / 삼성)

(금액단위 : 원, VAT포함)

적용타입	선택품목	구성	제조사	공급금액
전타입	선택1	오브제컬렉션 냉장고(4도어)+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3도어)+인출식수납장	LG	6,700,000
	선택2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비스포크 1도어 냉동고+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인출식수납장	삼성	5,800,000

■ 가전 선택 품목

(금액단위 : 원, VAT포함)

적용타입	적용위치	품목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선택품목	세부사항	제조사	
전타입	주방	식기세척기	빌트인	LG(14인용)	1,650,000
				삼성(12인용)	1,000,000
		전기오븐	광파오븐	LG	420,000

			비스포크 전기오븐	삼성	420,000
		인덕션 3구		LG	1,150,000
				삼성	1,300,000
	드레스룸	천장형제습기	드레스룸 천장에 설치	힘펠	1,000,000

■ 현관 특화

(금액단위 : 원, VAT포함)

적용타입	선택품목	세부사항	공급금액
전타입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수동 중문	1,400,000
	오픈 신발장	오픈 신발장+엔지니어드스톤 상판+가구매입조명	600,000

■ 복도 특화

(금액단위 : 원, VAT포함)

적용타입	선택품목	세부사항	주택형별 공급금액			
			84A	84B	84C	84D
전타입	마감고급화①	복도벽면 디자인패널	1,200,000	1,250,000	1,200,000	1,150,000

■ 거실 특화

(금액단위 : 원, VAT포함)

선택품목	세부사항		주택형별 공급금액			
			84A	84B	84C	84D
마감고급화 ②	① 거실 아트월 디자인패널		190,000	310,000	180,000	180,000
	② 거실 아트월 디자인패널 연장[*1]		410,000[*2]	해당없음	410,000	해당없음
	③ 침실1 디자인패널 마감 히든도어[*1]		600,000[*3]	600,000	600,000	600,000
거실/주방 바닥	스톤 강마루(600x600 이상)		1,500,000	1,200,000	1,420,000	1,300,000
조명 특화	84A,C,D	현관 : 라인매입조명 거실 : 우물천장 LED 간접조명+아트월 주방 : 우물천장 LED 간접조명(각도조절 식탁등 포함) + 라인매입조명 복도 : LED 조명박스	2,550,000	2,460,000	2,550,000	2,500,000
	84B	현관 : 라인매입조명 거실/주방 : 우물천장 LED 간접조명+아트월(각도조절 식탁등 포함) + 라인매입조명 복도 : LED 조명박스				

*1 : '① 거실아트월 디자인패널' 선택시 선택가능

*2 : '주방 특화 내 주방장식장' 선택시 선택불가

*3 : '① 거실아트월 디자인패널' 또는 '주방 특화 내 주방장식장' 선택시 선택가능

※ 침실1 디자인패널 마감 히든도어에는 속도제어장치인 댐퍼가 설치되며, 별도의 손끼임 방지장치는 설치되지 않음

■ 주방 특화

(금액단위 : 원, VAT포함)

선택품목			세부사항		주택형별 공급금액			
					84A	84B	84C	84D
선택	1	마감재 옵션	① 엔지니어드스톤 벽 (확장 기본 상판 동일 마감)		750,000	700,000	700,000	700,000
			② 세라믹타일 상판/벽 (이태리산)		3,1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2	주방 고급화패키지	독립형후드+상부플랩장+상부장조명+하부찬넬조명+자동터치수전+푸쉬댐핑서랍재	+마감재 옵션①	3,700,000	3,600,000	3,600,000	4,200,000
				+마감재 옵션②	6,950,000	6,800,000	6,950,000	7,550,000
주방 공간 특화			주방팬트리(시스템 선반 일반형) + 포켓도어		1,25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방 장식장			장식장+엔지니어드스톤 상판(발코니확장 기본 상판)		3,000,000	해당없음	1,260,000	780,000
			장식장+세라믹스톤(이태리산)		3,150,000	해당없음	1,380,000	850,000

■ 침실 특화

(금액단위 : 원, VAT포함)

선택품목	세부사항		주택형별 공급금액			
			84A	84B	84C	84D
드레스룸 고급형(통합)*1	선택1	드레스룸 중형 (시스템 선반 벽판넬형)+슬라이딩도어	6,30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선택2	드레스룸 대형 (시스템 선반 벽판넬형)+슬라이딩도어	8,000,000	4,600,000	7,600,000	6,500,000
침실 붙박이장	침실1(붙박이장/슬라이딩도어)		2,970,000			
	침실2(붙박이장/슬라이딩도어)		1,500,000			
	침실3(붙박이장/슬라이딩도어)		1,250,000			

*1 : 84A타입 '주방특화 내 주방공간특화' 선택시 드레스룸 중형 선택, 미선택시 드레스룸 대형 선택 가능

■ 알파룸 공간 특화

(금액단위 : 원, VAT포함)

적용타입	구성	공급금액
84B	팬트리+알파룸(가구 도어+알파룸 슬라이딩 유리도어+시스템선반(일반형))	2,400,000

■ 욕실 특화

(금액단위 : 원, VAT포함)

적용타입	품목	세부사항	공급금액
전타입	욕실 위생기구 특화	공용+부부욕실 고급형 세면대 및 수전(세면대/욕조/샤워)	2,500,000
	비데*1	공용욕실	320,000
	욕실 복합 배기휀 2EA (공용 + 부부욕실)	무드조명+습도케어+온풍+바디드라이+환기	1,080,000

*1 : 대림바쓰 벽걸이 양변기에는 대림바쓰 벽걸이 양변기 전용비데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11 단지 여건 등

※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길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 분		내 용
공통	일반사항	• **아파트 명칭은 '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아파트 명칭 및 펫네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동·호수의 표기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 및 운영시설로서 각 용도별 경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은 불가합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홍보물의 조감도, 투시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 등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현장답사 등 사전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본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면에 명기되는 면적, 치수 등은 실제 시공 과정에서 일부 경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층간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사업 부지면적 등은 법령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경우 주민공동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대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및 주민공동시설 등은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되, 위치의 지정이나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 수익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세대별 면적분할이나 위치지정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경계 및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단, 소수점 이하 변경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주지연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 아파트의 마감사양, 주민공동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주민공동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에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의2(2017.10.19 시행)에 따른 표시(「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표시) - 신기준(내진능력1급), 구기준(내진능력 MMI Ⅶ) 진도는 KDS 41 17 00에 의거하여 유효지반가속도 0.176g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에 대한 금원 확보와 금액 관리는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예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등의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 본 사업은 2025년 4월 28일 건축심의를 접수하여 2025년 8월 19일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건축심의 접수 당시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 및 흙막이 등의 가시설 공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 및 인공지반 면적, 녹지면적 등은 일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 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제고 등을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전이층 등),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단지명,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명칭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정화조, 배기관, 옥외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조경석 쌓기, 펜스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토목 및 건축옹벽, 난간, 펜스 등의 위치는 대지경계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인접 대지와의 높이 차이 등으로 대지경계선에서 단지측으로 이격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주민공동시설, 단지 외부시설물, 근린생활시설 등은 심의 의견 및 인·허가 승인 조건, 공사여건, 특화디자인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설계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위치 및 면적, 개소, 형태 등이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 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전문위원회심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 협의결과 조건, 관계기관 심의결과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단지 내 조경수 식재계획과 조경시설, 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마감재료 및 대지경계 선형과 같은 사항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로교통소음 예측평가결과에 따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실내소음도 기준을 만족하며, 방음시설이 일부구간(단지 동측 넙디로면) 설치되어있으나 추후 소음이 법적 기준 초과 시 그에 따른 방음시설이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일부 세대 등의 경우 이로 인해 조망 및 일조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 주변 현황	• 단지 주변 하늘대로, 넙디로, 찬들로, 영종대로, 공원, 초등학교 등 인접에 따른 소음, 진동 및 교통혼잡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동측으로 넙디로, 남측으로 찬들로, 공원, 초등학교, A20BL 공동주택 사업지, 서측으로 A18BL 공동주택 사업지, 북측으로 하늘대로 그리고 주변 인근 공동주택 등이 위치하여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바깥의 도로, 완충녹지, 소공원, 인근 업무시설·주택·상가 및 기타 혐오시설 등 존치건물·존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 등이 감소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존치건물 및 존치시설 등이 인접하여 주변 소음, 먼지, 분진, 조망권, 세대간섭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인근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불편과 준공 시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 완충녹지, 도로계획 및 도로관련 시설물 등은 별도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 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 부지와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의 방편으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 레벨 조정 등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 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본공사 시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본 단지는 해안가에 인접하여 해풍 및 염분노출로 인한 자재의 부식이나 오염이 일반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한 유지관리 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인근에는 자동크리넷(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영종하늘도시 내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자동크리넷(쓰레기자동집하시설), 변전소, 오수중계펌프장, 사회복지시설 및 묘지공원(봉안당) 등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계획으로 각 시설의 (예정)위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26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향후 영종하늘도시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 변경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단지계획**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용되어 설계된 단지입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쓰레기이송설비,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여 해당 시설의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실외기 등이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휴게공간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수종, 테마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 및 단지 내의 경사로, 단차 처리방안, 조경 계획 등은 본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상층 소방자동차 동선 및 전용구역선 등 위치는 담당 인·허가청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 및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로 진입하는 비상차량 동선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차공간의 바닥마감 및 레벨 등은 인·허가청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입주자 차량외 지상으로 진입 가능한 차량은 소방, 치안, 이사, 우편(택배), 폐기물 수거차량 등 입주민 공공이익과 관련된 차량만 진입이 가능하며 개별 사유로 지상에 차량 진입이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실과 협의하여 진입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DROP OFF ZONE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저층세대는 단지 인근 도로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물(쓰레기분리수거장, 쓰레기이송설비, 음식물수거함, 재활용품보관소, D/A(환기구), 자전거보관소, 가스정압기, 주차장 램프 지붕 등) 등은 위치, 디자인 및 재질, 구조,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제연용 그릴창, 옥외 계단·경사로 및 지하 또는 지상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휀룸 등은 본공사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기계·전기실, 환기창, D/A(환기구) 등)과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이 주거동의 전·후·측면 등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 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공사 시 규모, 위치, 개소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변에는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환기구)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위치는 설계도서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지상에 쓰레기이송설비가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소음, 냄새 등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송설비 위치는 공사시 설치구조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 비주거 부분의 옥상 또는 인근 동 주변, 1층 필로티 공간 등에 급배기, 환기휀, 기계장비,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냄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저층의 경우 단지 내 옥상조경 및 산책로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음벽 등에 의해 일조·채광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보행로 등이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사생활 침해, 일조·채광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조경 식재 및 시설물(녹지, 잔디, 수목, 전기·통신시설물(공용·외부조명 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물, 조경시설물, 보도·차도 포장재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써,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서비스 등에 관한 책임 및 발생 비용 등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 운동시설 등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시설물 명칭, 위치, 크기 등도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각 동 외부(1층)에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의 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거리, 세대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2. 본 계약물건의 계약 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3.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 D/A(환기구), 천창,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산책로 및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4. 단지 내 주차장 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휀룸 , 실외기실 ,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환기구)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시선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등에 의해 일부 세대는 눈부심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 시설물(출입구, 주차출입구, 경비실, 부대시설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야간조명,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블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쓰레기분리수거장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아파트용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 후 발생하는 제반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수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 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장고 및 마감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쓰레기이송설비로 배출할 수 없고, 단지내 재활용창고에 설치된 음식물 종량기(RFID)를 통해 배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악취,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별	• 일부동에 BI 등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반사 및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일부 세대 전·후면에 대형수목 등 식재 설치 및 방음벽 설치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동별 일부 직각배치 또는 서로 마주보는 일부 세대는 사생활권(프라이버시 등)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배치도 및 분양홍보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61동 4호라인, 362동 1호라인, 363동 1,2호라인, 365동 6호라인의 거실창 유리에는 본 아파트 건축심의 조건으로 부여받은 주개구부 간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생활보호필름이 설치됩니다. 사생활보호필름으로 인한 실내외 빛 반사, 태양광/열 저감, 유리창 이질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생활보호필름은 주간 사생활 보호용 보조수단이며, 야간에는 커튼·블라인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엘리베이터 사양은 각 동의 코어별 최고 층수에 따라 인승 및 속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 출입구는 구조 및 천장 속 배관설치 높이 등에 따라 천장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어린이놀이터, 옥상조명,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불빛에 의해 조망권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출입구와 인접한 각 동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출입구 구조물로 인해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일조·채광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해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 여건 등에 대해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어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 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통행 등으로 의해 소음 발생과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상부층은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동 엘리베이터는 기계실 없는 타입으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펌프 작동에 의한 일부 저층세대의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61동과 362동 사이에 티하우스, 362동과 363동 사이에 어린이집과 유아놀이터, 363동과 364동 사이에 경로당과 방재실, 365동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361동 인근에 키즈스테이션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62동과 363동 사이에 어린이놀이터, 363동과 364동 사이 수경시설, 364동과 365동 사이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61동, 363동, 364동 인근에 재활용창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인근에 쓰레기이송설비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옥상층지붕, 난간, 조경,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프라이버시 및 조망권 침해, 소음, 진동,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조경 구간에 관계기관(소방)의 요청에 따라 에어매트 설치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교목은 식재할 수 없으며, 사생활(프라이버시 등)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재실에 에어매트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 이동 및 설계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지붕 및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공용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태양광 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명 및 빛의 산란, 소음, 진동 등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와 인접한 동의 저층부는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공용홀 내 창호의 개수와 크기가 주동마다 상이하므로 채광 및 환기가 불리한 세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는「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부난간이 유리난간이므로 이삿짐용 사다리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삿짐 운반은 승강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 위치는 층별,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361동~365동 옥상층 및 옥탑층에 태양광 패널이 다수 설치될 예정이며,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수량 등)은 본공사 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361동, 362동, 365동 입면에는 태양광패널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빛반사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 회차공간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에 연접한 361동, 363동, 365동 저층부 세대는 회차차량 및 근생주차차량에 의한 빛공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64동, 365동 동측으로 약 2.5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으로 저층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하는 소음의 법적 기준 초과시 방음시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외관계획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G, 모형, 사인물(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등) 등은 심의 및 인·허가 승인자료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단지 외관 차별화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외부 창호의 형태, 재질, 크기, 색상 및 루버의 위치 및 크기 등은 심의 의견 및 인·허가 승인 조건, 공사여건, 특화디자인 등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외관 및 색채, 마감, 동출입구 및 저층부 마감 패턴, 옥탑디자인, 지붕디자인, 경관조명, 부대시설 외관 등의 세부 디자인은 단지 외관 차별화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측벽 및 옥상의 BI 설치 개수 및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61동 정면과 우측 입면, 362동 우측 입면, 365동 우측 입면에는 BIPV가 설치되며 설치용량 및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BIPV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서비스 등에 관한 책임 및 발생 비용 등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주동 외벽 등에 부분 장식물, 조명 및 별도 마감재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의 외벽에 부착되는 사인물, 장식물은 견본주택 모형도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등),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옹벽, 석축,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본공사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조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주동,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저층부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외부그릴 등의 형태 및 색 등),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옹벽, 석축,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본공사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조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주차장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용 6대를 제외한 지상주차장은 없으며, 지하주차장에 통합하여 배치되어 있으며, 각 동에 인접한 주차대수가 타동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1층의 주차장 주출입구는 법적기준에 따라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하의 택배차량이 지정된 통로로 각 동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지하2층은 2.3m로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 지하주차장은「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차로의 유효높이 2.3m 이상(주차공간은 2.1m 이상) 확보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층별, 구간별 높이는 일부 상이할 수 있고, 본공사 시 레벨 변경 및 각종 배관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높이 일부 구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361동과 365동 사이에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주차 출입구의 디자인 등은 홍보물 등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계획상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 벽, 설비와의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으로 승하차 시 이용에 불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을 실로 사용하거나 면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공동주택(주민공동시설용 등 포함), 근린생활시설 등의 각종 배선, 배관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본공사 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충전 시 차량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근접 주차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 수량 및 사양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PIT 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 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 구획은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는 아파트 주출입구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지상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차공간의 경우 인접구조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단지 내에 지역정압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의 소음 및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 지하층 및 지하층 주변에 휀룸 또는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휀룸 등은 본공사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발전기가 가동되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전기공급과 관련,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본 아파트 부지 내 지상 한전개폐기 설치 및 부지 무상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지내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한전패드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위치이동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MDF실은 분리되어있으나 방재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일부 장비 및 서버는 시설별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며,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및 전기요금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 TPS(통신실)는 필요한 층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법적 시설로서 그 위치 및 면적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CCTV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배 등으로 보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지 내 모든 CCTV는 공용 방재시스템에서 운영되며, 각 세대와의 연결, 사용은 제한됩니다. • 원패스 시스템은 공동현관문 자동열림 및 승강기 호출(로비층)이 가능하며 스마트폰과 무선통신으로 구현하는 방식(스마트폰 Key방식)으로 별도의 원패스키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입주자 출입카드(RF 방식)를 사용하여 수동 Tag 또는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공동현관 출입 가능) • 원패스 시스템의 경우 일부 스마트폰은 제조사 및 OS 정책에 따라 연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여 362동, 364동, 지하 1층 동 통신실에 이동통신 설비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으로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하며,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각 동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창호**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외부창호는 이중창호(침실1 발코니, 실외기실 창호 제외)로 설치되며, 거실창과 침실1 발코니 외부난간은 유리난간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주동 창호는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본공사 시 형태 및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창호 특성상 이삿짐 운반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창호 등은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형태 및 재질,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는 이해를 돕기 위한 mockup으로 제조사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방화문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 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루버의 크기 및 사양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밀폐된 생활 환경 속에서 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화분, 빨래 등으로 인해 실내 상대 습도가 40~5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창호 유리면 및 창틀 주변에 결로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므로, 주기적인 환기는 결로 현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평면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기본 제공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평면도와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각종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 단위세대 실내 천장고는 거실기준 2.3m이며, 우물천정, 실외기 및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과 욕실, 현관의 천장고는 각각 상이합니다. • 본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세대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커튼박스 높이 및 창호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고는 설비자재 설치 간섭에 따른 천장고 높이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스배관이 주방 상부장으로 지나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의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 배관은 세대 천장, 발코니 천장, PD 등을 관통하여 외부에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침실등이 침실 중심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 • 발코니 비확장(기본형) 세대의 경우 세대 내 창호 위치 및 크기는 차후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방향은 차후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일부타입의 다용도실 내 세탁기 설치위치는 드럼형의 경우 문열림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탁기 설치전 사용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축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등), 길이 및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 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 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혹은 일체형가전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및 입주시 유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해안가에 인접하여 강풍 등에 따라 상층부 세대 상부 난간대 흔들림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 미확장형을 선택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형 세대의 단열을 위하여 비확장 세대의 해당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돌출 시공되거나 결로 발생,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확장 세대의 배관 일부가 비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될 수 있어 미관저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사이즈가 상이합니다. •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탁기 설치공간이 협소한 경우 공간을 고려한 세탁기 제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건축계획으로 인한 공간의 협소이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탁기 개폐 방향에 따른 발코니 수전 및 발코니 출입문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탁기와 건조기의 수직 설치 시 창문 개폐가 불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각 세대는 화재 시 피난을 위해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화재 시 해당 피난시설의 사용을 위해 물건적치 등을 금하여 대피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짝수층과 홀수층이 교차되어 실외기실 내부에 설치되고 발코니 상부에 피난용 사다리가 노출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 세대는 비상 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물건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 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물청소 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 강제 오픈시 아래 세대의 월패드와 연동되어 비상경보음이 송출될 수 있습니다.
	가구, 마감재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가구장 상부 몰딩 및 복도 아트월 또는 시트판넬의 형태는 본공사 시 마감 개선을 위해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수전 위치는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수납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온수분배기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음) • 세대 내부의 가구(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욕실장 후면 타일 미시공, 붙박이장, 신발장 및 주방가구 및 빌트인제품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시공 등) • 거실 내부에 면하는 출입문(현관문, 주방 발코니문, 외부창호 등 제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끼임 방지장치가 제공되며, 제품 사양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경, 비틀림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공간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침 방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 등이 있을 수 있음) • 주방상판은 제품 특성상 접합부(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 및 나눔 부위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 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발코니 도어 등)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타일 마감재 등에 포인트 타일 요철로 인해 줄눈마감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아트월, 현관바닥, 욕실, 다용도실 바닥 등의 타일 나누기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가구는 각 평형별 크기가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또는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실, 주방, 침실 등 바닥은 층간소음저감바닥구조인 뜬바닥구조로 적용하여 다소 보행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침실문은 일반 목재문이 아닌 준불연소재문으로 일반 목재문보다 두껍고 무겁습니다. • 공용욕실 및 부부욕실의 벽마감은 벽타일판넬로 시공되며, 도기질 벽타일을 폴리우레탄 및 프레임으로 부착하여 판넬로 만든 것으로 단열성능을 제공하지만 두드렸을 때 경량음이 발생하고 입주자가 별도의 부착물 등 설치시 나사고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 공용욕실 및 부부욕실의 배수배관은 층상벽배관 방식이므로 아랫세대 천장에 배관이 있는 구조가 아니라 당해 세대 벽타일판넬 후면 및 당해층 바닥에 설치되므로 배수배관 문제시 당해 세대에서 보수해야 합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욕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재료분리대 높이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에 시공되는 공장 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기계설비	• 단지 내 각 세대는 지역난방으로 계획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될 예정으로 향후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일부 구간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덕트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상부장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점검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후드 설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실외기실에는 냉매배관 및 드레인 등이 노출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타입에 따라서 주방상판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 시스템 및 욕실 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동체감지기는 1,2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에 한하여 설치됩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2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에 설치)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침실(출입문 뒤편) 중 한 곳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제어 스위치 기능 중 가스차단 기능을 실행할 경우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복구를 할 경우에는 주방에서 입주자가 직접 수동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호출기능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호출기능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안방(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별도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선택시 안방 및 거실의 에어컨 냉매배관(매립), 실내기용 콘센트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유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 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방/드레스룸 빌트인 가전, 침실 붙박이장, 욕실패키지 등)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위치 및 설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침실에 적용되는 전자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제어의 통합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제어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바닥배수구, 오수배관 입상, 수전금구류, 액세서리류, 위생도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의 전화 수신 기능은 국선전화를 가입한 세대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 외부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현관 창고,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욕실의 경우, 마감 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 난방이 시공됩니다. (욕실의 욕조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적용되지 않음) • 급수급탕 분배기는 욕실천장 또는 다용도실 벽면에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급수, 급탕 분배기 설치부위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있음) • 발코니 및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되며, 본공사 시 시공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세탁실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 세탁배수, 발코니배관은 하부세대에 노출 설치 됩니다. • 우오수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에어컨 운전시 실외기실 외부 그릴이 항상 열려 있는지 확인 후 운전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 하지 않은 상태의 문제 발생시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 전기설비 마감재(분전반, 통신단자함,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기구는 전열교환 환기유니트 등 타 설비기구 등과 간섭시 조명기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쿡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프라(콘센트 및 배관/배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소비전력 3.5kW 초과하는 전기쿡탑을 개별적으로 설치할 경우 입주자 부담으로 별도 전기공사가 필요합니다. • 가구 및 가전용 간접 조명(주방장 라인조명, 화장대거울 간접조명 및 주방후드 조명 등)은 자체 ON/OFF로 제어되며, 일괄제어 스위치의 일괄소등 동작시에는 연동하여 소등되지 않습니다. • 홈네트워크 외부제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전용 인터넷 회선 설치 비용 등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홈플랫폼과 연동하는 홈IoT 가전제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를 설치하여야 하며(통신사 무관),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온도에 따라 자동 개폐 가능한 무전원 방식의 환기 그릴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벽면 및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 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또는 홈토메이션)의 기능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홈플랫폼**	• 홈닉 홈플랫폼 서비스(이하 "홈플랫폼 서비스")는 홈플랫폼 제공업체 삼성물산㈜(이하 "홈플랫폼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홈IoT, 생활정보, 라이프스타일 등 서비스를 단일 앱으로 통합하여 입주민에게 새로운 User Experience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홈닉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홈닉APP")에서 세대 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등 제어가 가능하며,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스마트 가전제품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홈플랫폼 제공업체"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하며, 입주시 일부 기능은 "홈플랫폼 제공업체"의 이용약관에 준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홈플랫폼 서비스" 사용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작일을 기준으로 "홈플랫폼 제공업체"의 무상서비스 기간(24개월 또는 36개월, "홈플랫폼 제공업체" 정책에 따라 상이함)이 지난 날부터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 • "홈플랫폼 서비스"는 추후 성능 개선, 입주 시점의 기술 변화 등의 사유로 일부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서비스의 제공이 종료될 수 있고, "홈플랫폼 제공업체"의 사업정책에 따라 3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홈플랫폼 제공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홈플랫폼 서비스"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플랫폼 서비스" 관련하여 시공사는 기본 인프라만 제공하는 것으로 "홈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홈플랫폼 제공업체"의 이용약관에 준합니다.

		• "홈플랫폼 제공업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민공동시설	•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주민공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주민공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천장 높이는 설비자재와의 간섭 등으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기본제공 품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은 공간 및 기본 마감재만 제공되며, 내부 집기류, 이동가구 및 장비 등은 제외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 관리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제공되며, 마감재 및 기본 제공 품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의 일부 공간은 입주시 A/S센터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주민공동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구조, 창호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티하우스, 키즈스테이션,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대상이 아니나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본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이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당해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1단지 입주민의 경우 2단지 주민공동시설 이용이 불가합니다.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내·외·옥상부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과 외부도로와의 레벨 차이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 출입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이용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주 출입구 근처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의 간판은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승인권자와의 사전협의 후(지침준수 등) 설치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는 아파트 주출입구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지상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학교	• 학생배치사항안내 - (초등학생) 초등학생은 (가칭)영종하늘2초(2029.3월 개교 예정)에 배치 예정이나, 개교 전까지는 현 통학구역 내 지정학교에 임시 배치할 예정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개교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며, 개교가 지연될 경우 개교 전까지 인근 학교에 임시 배치될 수 있음. - (중·고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학교군 내 배치 예정임 • 아파트 인근에 위치해 있는 초등학교의 설립주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 학교 설립시기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 계획은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인근 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와 인접한 초등학교 부지의 취소 및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인근 모든 교육시설의 설립 등은 인근 공동주택의 개발사업 진행 상황, 분양률 입주 상황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학생수용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수용계획은 향후 인근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할 교육청에서 재정투자사업 심사 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여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생배치 사항 안내 • 입주시기에 맞춰 신설 초등학교의 개교가 불가능할 경우 인근 초등학교에 임시 배치하고 통학대책 등을 관할 교육청과 협의(임시 배치학교의 통학대책은 사업주체 수립하여 마련할 예정이며, 임시학교 배치 시 관할 교육청의 의견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초등학생 통학구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통학구역 지정계획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중·고등학교 학교군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 가능함. ※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 변경(취소, 세대수 변경, 입주시기 조정), 인근 개발사업 추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배치 기준(학급별 학생수 상·하향 조정 등)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견본주택	일반사항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 및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본공사 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모형 및 분양홍보물의 CG 등의 문주 및 주차장 진입 상부 구조물, 주동 출입구,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주민공동시설 등은 본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 설치 위치, 형태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84A 유니트가 건립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당사 홈페이지, 분양홍보물, 이형 단위세대CG 등을 통해 차이점을 청약 및 계약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으나,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공사 시 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소화기, 시각경보장치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 기준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주동 옥탑층 및 측벽의 층수 표기 사항은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공사 시 KS조도 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전시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의 경우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공사 시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분양홍보물,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및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신고 및 승인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VR영상 등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안내 등은 청약 및 계약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 CG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온도조절기, 스위치,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시행(변경)인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고, 추후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없이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없는 타입의 조명기구는 타입에 따라 견본주택의 조명기구와 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유니트 내에 설치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제품으로 본공사 시 에어컨 크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시품목	•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공사 시 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텐,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시 제외됩니다. • 견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상옵션 품목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마감사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마이너스 옵션

(1)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 「주택법」제5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임.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 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품목
문, 창호	목창호 문틀/문짝/문선, 손잡이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욕실문틀 하부씰, PVC창호 내외창, AL창호 외창, 현관방화문, 디지털도어록, 다용도실/실외기실 창호 및 도어
바닥	현관 - 바닥타일, 디딤판 및 챌판 거실/주방/각실 - 광폭 강마루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 -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 포함)	바닥난방, 발코니 바닥방수, 발코니배수구, 에어컨 매립배관
벽, 천장	벽지(초배지 포함) 및 천장지, 거실 아트월타일, 벽판넬 일체, 우물천장, 몰딩 및 걸레받이 일체, 팬트리/드레스룸 가구도어,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 벽/천장 도장	천장틀 및 석고보드, 건식벽체, 커튼박스, 벽체단열재 및 석고보드, 소방스프링클러 배관 및 헤드,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시멘트벽돌 및 미장공사
욕실	욕실바닥 및 벽타일(타일시공 몰탈포함), 욕실천정(틀포함), 인조대리석 선반, 샤워부스, 재료분리대, 환풍기, 위생기구(양변기,세면기,욕조,샤워기 등), 욕실비데, 코너선반, 설비수전류, 액세서리류 일체	시멘트벽돌, 방수공사(바닥/벽), 설비배관(급수, 급탕), 배기/배수, 전기 배관 및 배선, 슬리브
주방	벽타일,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인조석 상판 및 액세서리 일체), 냉장고장, 렌지후드, 가스쿡탑, 씽크볼 및 악세서리류 일체, 무선충전콘센트, 설비수전류 일체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급,배수/오수/난방), 주방배기덕트, 전기/통신 배관,배선
일반가구	현관장, 시스템선반(드레스룸 및 팬트리), 화장대, 욕실장(욕실1,2), 수납선반(김치냉장고 및 다용도실)	
조명기구 등	조명기구(토출형, 부착형), 스위치, 전기/전화/TV 콘센트	전기배관, 배전 스위치 및 콘센트, 매입등기구(욕실 제외)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은 기본형(비확장형) 기준이며, 상기 품목들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금액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약식표기)	84A	84B	84C	84D
마이너스 옵션금액	35,529,000	35,701,000	35,783,000	35,526,000

(4)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확장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 및 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자재수급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3조 규정의거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건축법 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중도금 대출 알선이 불가 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 알선이 불가능 할 시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 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기본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건축 [1단지(A19BL), 2단지(A20BL) 통합감리]	㈜한빛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3,561,919,000원
전기 [1단지(A19BL), 2단지(A20BL) 통합감리]	유원이앤에프(주)	668,394,509원
소방	㈜진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89,110,637원
통신	서한컨설탄트(주)	187,00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에 따른 감리계약 체결현황 및 통신감리계약체결현황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 등)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함.

※ 공급계약 또는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및 교환 등만 해당.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 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함.

※ 상기내역은 참조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의무사항 적용여부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미적용	가정용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고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표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 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 수전류는「수도법」 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장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구 분	적용여부
내진중요도 1	신기준(내진능력1급), 구기준(내진능력 MMI Ⅶ), 진도는 KDS 41 17 00에 의거하여 유효지반가속도 0.176g 적용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XII)으로 표기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의2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적용여부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0m 이상	지하2층 주차장 : 2.3m 지하1층 주차장 : 2.7m 이상	지하1층 주차장 : 2.7m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인천영종하늘도시 A19BL 공동주택(공동주택)
건축주	(주)신일
준공일	2028.08.31. (예정)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95-2
층수	지하2층, 지상21층
연면적(㎡)	77,257.25
건축물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에이엔유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주)

인증 개요	
인증번호	G-SEED-P-2025-0975-6
인증기관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유효기간	2025-10-02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인증 등급	
인증등급	우수(그린2등급)
인증용도	신축 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29호 환경부고시 제2023-172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우수, 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종합등급 ★★★

2025년 10월 02일

(사) 한국그린빌딩협의회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인천영종하늘도시 A19BL 공동주택(공동주택)	2. 신청자	(주)신일
3.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95-2	4.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향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향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향목	성능등급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라. 환경 관련 등급

성능향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마.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향목	성능등급
1.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과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이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
14. 방범안전 콘텐츠	★★★
15. 주차공간 추가 확보	★★★

바.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향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사) 한국그린빌딩협의회장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4. 12. 23.>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인천영종하늘도시 A19BL 공동주택	인증번호	: 20250929-1128-0646
준공연도	: 2028.08.31	평 가 자	: 지미정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95-2	인증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층 수	: 지상 21층 / 지하 2층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 면 적	: 77462.2590 (㎡)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인증 등급	
설계자	: 에이엔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 5 등급
건축물 대지 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주소	:	□ 에너지 자립률(%)	합 계 : 28.03 % 대지 내 : 28.03 % 대지 외 : 0.00 %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년)	: 74.7 kWh/㎡·년

※ 해당 인증결과는 국제규격에 따라 건축물의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 성능을 정량 평가(Asset Rating)한 결과로 실제 사용 환경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평가 결과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 자립률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74.7 kWh/㎡·년	28.03 %	ZEB Plus, ZEB1, ZEB2, ZEB3, ZEB4, ZEB5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유무 [○]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에너지 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에너지 자립률	1차 에너지 총소요량 대비 1차 에너지 순생산량에 대한 백분율

※ 상세한 인증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합니다.
※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예비인증 결과는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으로 결정되어 이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 년 09 월 29 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장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VAT포함)

항목		공종	금 액(원)	비고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62,873,529	
		기간이자	481,643	
		필요적 경비	17,282,038	
		그 밖의 비용	3,282,654	
		계	**83,919,864**	
공사비	토목	토공사	2,874,061	
		흙막이공사	0	
		비탈면보호공사	0	
		옹벽공사	0	
		석축공사	0	
		우수, 오수공사	1,077,773	
		공동구공사	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0	
		도로포장공사	1,197,525	
		교통안전시설물공사	119,753	
		정화조시설공사	0	
		조경공사	1,796,288	
		부대시설공사	1,077,773	
	건축	공통가설공사	3,592,576	
		가시설물공사	1,437,030	
		지정 및 기초공사	2,395,051	
		철골공사	0	
		철근콘크리트공사	37,842,874	
		용접공사	0	
		조적공사	2,155,546	
		미장공사	2,634,556	
		단열공사	0	
		방수, 방습공사	2,035,793	
		목공사	3,353,071	
		가구공사	2,035,793	
		금속공사	2,035,793	
		지붕 및 홈통공사	0	
		창호공사	4,311,091	
		유리공사	1,676,535	

항목		공종	금 액(원)	비고
공사비	건축	타일공사	2,634,556	
		돌공사	2,754,308	
		도장공사	1,077,773	
		도배공사	958,020	
		수장공사	1,556,783	
		주방용구공사	2,155,546	
		그 밖의 건축공사	1,077,773	
	기계 설비	급수설비공사	2,035,793	
		급탕설비공사	1,604,577	
		오수,배수설비공사	1,976,185	
		위생기구설비공사	359,258	
		난방설비공사	0	
		가스설비공사	2,514,803	
		자동제어설비공사	479,010	
		특수설비공사	239,505	
		공조설비공사	0	
	그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5,867,874	
		정보통신공사	2,155,546	
		소방설비공사	3,951,834	
		승강기공사	1,916,040	
	그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5,048,939	
		이윤	2,508,896	
	계		**116,521,897**	
간접비	설계비		1,059,300	
	감리비		2,402,882	
	부대비	일반분양시설경비	10,016,252	
		분담금 및 부담금	3,075,975	
		보상비	0	
		기타 사업비성 경비	13,364,490	
	계		**29,918,900**	
그 밖의 비용			**19,374,645**	
합계			**249,735,307**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1조 제3항,「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원, VAT포함)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택지비 가산항목	**택지비 가산비 계**		**21,046,335,371**	건축비 가산항목	**건축비 가산비 계**		**19,374,645,406**
	법정 택지이자		481,642,789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1,297,322,688
	취득세	취득세	2,514,941,162		인텔리전트 설비공사비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4,676,832,900
		지방교육세	251,494,116			에어컨냉매배관 설비공사	1,053,340,200
	재산세	재산세	264,068,821			기계환기 설비공사	3,085,014,600
		지방교육세	52,813,763			쓰레기이송설비	975,645,000
		과세특례	184,848,175		공동주택 성능등급		4,263,146,932
	등기수수료	보수료	14,139,316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1,792,105,549
		인지세	349,073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618,370,000
	방음시설설치비		89,575,065		법령개정	전기차 충전시설	317,572,200
	말뚝박기 공사비		7,318,536,519		사업승인조건	조경특화	-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8,454,285,013			저층부석재마감	-
	택지와 관련된 경비	지역난방 부담금	582,483,334			커튼월 공사비	613,141,21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37,158,225		분양보증수수료		682,154,125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출근거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산출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168,381,220,000원	제01282025-101-0007300호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칭함)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 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 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함.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람(1566-9009)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

구 분	사업주체 및 수탁자	위탁자	시공사
상 호	㈜한국토지신탁	㈜신일	㈜신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5
법인등록번호	110111-1258220	214911-0003336	214911-0003336

■ 신탁관련 특약사항

본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탁자 ㈜신일, 사업시행자 겸 수탁자(신탁회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근거함을 계약자는 인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위 목적물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진된 신탁사업에 따라 신축, 공급되는 것으로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수탁자가 매도인의 지위를 보유하나 신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위탁자에게 매도인의 권리, 의무가 계약변경 등 별도 조치 없이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는 '신탁재산'이라는 특수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이에 동의한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 우선수익자의 지급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위탁자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위탁자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분양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자 지위의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항

구분	내용
부동산개발업자의 상호·명칭, 등록번호	㈜한국토지신탁 / 등록번호 080010
부동산개발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한 내용	2025년 09월 25일 1단지(A19BL)사업계획승인(2025-도시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 2025년 11월07일 1단지(A19BL)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변경(2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25129)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	1단지(A19BL)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95-2번지 건축용도 : 공동주택(44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
착공일, 준공예정일	2025년 12월 착공 / 2028년 6월 사용검사(예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건축물의 경우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대지소유권 100% 확보
판매의 경우 소유권 이전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등)	잔금 완납시 공유지분 등기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의 명칭	분양대행사 ㈜유성
분양대금관리	㈜한국토지신탁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신탁회사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신탁회사: ㈜한국토지신탁 / 분양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분양 홈페이지 : https://신일비아프크레스트.COM
■ 분양사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8
■ 분양문의 : 1833-8828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